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56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공사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8. 6. 29. 선고 2017구합78216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0. 16.
판 결 선 고	2018. 11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2. 10.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5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다.

○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더욱이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변전소에 관하여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2.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다가 [redacted]시의 지도점검에서 이 사건 변전소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. 2. 10.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인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.

○ 제1심판결서 1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가.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5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